

예산총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48,918,170	16,467,545
일반회계	478,933,607	14,368,008
특별회계	69,984,563	2,099,537
공기업특별회계	58,639,044	1,759,17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677,527	950,32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961,517	808,846
기타특별회계	11,345,519	340,36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476,216	74,28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046,000	31,380
도시재생특별회계	454,500	13,635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15,753	60,47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353,050	160,59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636,044천원(일반예비비 4,500,00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3,309,493천원, 내부유보금 826,55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해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